



SK D&D 협력사 행동규범



목차

1. 개요	3
가. 행동규범 목적	3
나. 행동규범 대상	3
다. 협력사 책임과 역할	3
1. 윤리	4
가. 투명경영 및 반부패	4
나. 이해상충 방지	4
다. 불공정 거래 방지	4
라. 정보보호	4
2. 환경	6
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6
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6
다. 수자원 관리	6
라. 대기오염물질 관리	7
마. 폐기물 관리	7
3. 노동 및 인권	8
가. 차별 금지	8
나.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8
다. 근로시간 관리	8
라. 인도적 대우	9
마. 결사의 자유 보장	9
바. 아동노동 금지	9
사. 강제노동 금지	10
아. 원주민 보호	10



4. 안전/보건	11
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11
나. 부동산/건축 산업 안전 관리	11
다. 비상 상황 대응	11
라. 사고 관리	12
마. 안전 진단	12
5. ESG 리스크 관리	13
가. 기업 성명서 공시	13
나. 담당자 선임	13
다. 리스크 점검	13
라. 교육 및 소통	13
마. 정보 관리	14
바. 고충 처리 제도 운영	14
사.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관리	14
아. 규범 준수	14



1. 개요

가. 행동규범 목적

2022년 유럽의회(European Commission)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 승인, 국내외 공급망 지속 가능성 관리 관련 법, 중대재해방지법 확대 등의 이슈는 기업이 ESG 리스크를 저감하는 일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SK D&D는 공급망의 지속가능한 구축을 위해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으며, 본 행동규범은 전 협력사에게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 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SK D&D는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상호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행동규범 대상

SK D&D에 재화, 용역, 기타 거래 등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의 적용 대상인 협력사는 거래업체, 하위 협력사 등 협력사의 전체 공급망이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 협력사 책임과 역할

SK D&D의 모든 협력사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 운영과정에 있어 본 행동강령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SK D&D의 위탁을 받은 제3자 기관은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SK D&D는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만일 개선사항이 도출된다면 협력사는 이에 대해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 완화계획 수립 및 이행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협력사의 이행 의무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 아니며, 추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SK D&D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SK D&D 담당 부서를 통해 본 행동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윤리

가. 투명경영 및 반부패

- 해당 내용은 당사에서 계약 시 협력사에 징구하는 윤리경영 이행각서를 준수합니다.

나. 이해상충 방지

- 협력사는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 협력사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특정 수단을 약속하거나 제안하거나, 허가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받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 불공정 거래 방지

-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협력사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담합하는 경우 등)는 금지됩니다.
- 협력사는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라. 정보보호

-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구하는 정보를 무단유출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 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협력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서 사전에 합의된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야 합니다. 만일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환경



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성과점검 등으로 구성된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 협력사 전반의 자재 구매 고려 시 친환경 자재 구매 및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 녹색 건축(Green Building)

- SK D&D는 친환경 건축물의 부동산 개발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 녹색 건축물 개발 및 운영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시, 협력사는 녹색 건축 인증과 운영에 협력해야 합니다.

다.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 고효율 설비 및 전기 기구 설치, 스미트 빌딩 기술 활용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라. 수자원 관리

-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마. 대기오염물질 관리

- 협력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바. 폐기물 관리

- 협력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재사용/재활용 확대,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자원 채취에서 제품의 최종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 재료 및 구성 요소에 대해 환경 영향 평가 혹은 전 과정 평가(Life-cycle assessment)를 실시하여 제품의 환경 부하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노동 및 인권

가. 차별 금지

- 협력사는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 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협력사는 임금의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 등의 운영에서 임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및 제도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및 제도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임직원의 경력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 근로시간 관리

-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임직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라. 인도적 대우

-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지양합니다.
- 협력사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에 고지하며, 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임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괴롭힘을 금지해야 하며, 직장 괴롭힘의 피해 임직원에게는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해 임직원에게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마. 결사의 자유 보장

- 협력사는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교섭단체 설립과 운영을 허용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임직원의 대표자와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바. 아동노동 금지

- 협력사는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연소자가 노동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아동노동에 관여되어 있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 강제노동 금지

-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 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임직원의 개인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신분증, 사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정신적 속박 행위는 금지됩니다.
- 협력사는 신체적/정신적 속박이나 채무관계에 의한 강제노동 등에 관여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 원주민 보호

- 협력사는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DRIP)을 준수하며, 부동산 개발, 투자 사업 등을 운영할 때 원주민의 토지, 영토 및 자원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 협력사는 원주민 관련 이슈가 있는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원주민들을 사업 관련 논의에 참여시키고 적절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5. 안전/보건

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안전보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직, 계획, 절차, 결과 점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나. 부동산/건축 산업 안전 관리

- 협력사는 사업장 내 안전에 대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 화재, 전기 및 가스 안전 등을 파악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현장 검사, 보고 시스템, 안전 규정 준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방호벽, 긴급장치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임직원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전 보호구는 임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다. 비상 상황 대응

- 협력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사고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 상황 발생 시 보고, 대응, 후속 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 협력사는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자체 수립된 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비상 상황 발생 시 탈출로, 유도등, 화재 감지기, 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라. 사고 관리

-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 안전 진단

- 협력사는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임직원이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공간의 안전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는 임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기계·기구·설비를 개선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안전 위험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임직원에게 작업공간의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임산부, 연소자 등을 안전보건 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 이민자 등 기타 사회적 취약 임직원이 작업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 ESG 리스크 관리



가. 기업 성명서 공시

-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혹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경영진 신년사, 내부지침,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사내에 공유할 것은 권고합니다. 이에 더해,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 공개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담당자 선임

-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 활동, ESG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 활동 계획 수립과 이행현황을 감독하는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 리스크 점검

-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환경, 노동 및 인권, 안전 및 보건 분야의 리스크를 확인하고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부동산, 금융 투자사의 경우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환경/사회적 (e.g. 생물다양성, 온실가스 배출 등) 리스크 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라. 교육 및 소통

-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관련 법률 및 제도에서 다루는 사항과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임직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이행성과 등을 임직원에게 공유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 정보 관리

- 협력사는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현황 및 리스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별 법률, 산업단체, 사업계약을 체결한 중요 고객사 등에서 해당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 고충처리 제도 운영

- 협력사는 임직원이 윤리, 환경, 노동 및 인권, 안전 및 보건 분야의 법률 및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 또는 인지하거나,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임직원이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 보복, 조롱 등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사.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관리

- 협력사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기획, 설계, 판매, 제조하는데 있어 계약을 맺은 거래업체(하위 협력사)에게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요소를 관리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가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련된 리스크를 인지한 경우, 거래업체(하위 협력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 규범 준수

-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에 대해 SK D&D 또는 SK D&D가 지정한 제3자가 진행하는 서면점검 또는 현장방문시 행동규범 준수 여부 및 이행 수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작성·관리 해야하며, 해당 문서는 사업 운영에 대한 실제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에 대한 서면점검 혹은 현장방문을 통해 도출된 결함이나 위반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